

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 감사요청 동의수가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감사요청(안 제3조)
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2항 개정(2023.10.24)에 따라 입주자들의 동의 수 변경
 - 10분의 3 이상의 동의 → 10분의 2 이상의 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‘안 제3조’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표자 선정 및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을 기존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